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1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산학연협력에 있어 기업은 산업 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를 제시하고, 현장 기반 교육·연구를 통해 인재 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생 취창업·진로 지원 시스템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교육-실습-취·창업지원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 발전 산업과 연계하여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부재함.

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²⁾,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³⁾ 등에서 기업이 아닌 대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학을 거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산학연협력에서 주요 기능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3)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7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적·물적 협력이라는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적극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인적·물적 협력의 범위, 지원 기준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거나,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대학과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